

외국인전임교원임용규정

- 제정 : 2004. 3. 1.
- 개정 : 2011. 6. 30.
- 개정 : 2012. 6. 29.
- 개정 : 2017. 8. 31.
- 개정 : 2019. 6. 18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외국인 전임교원(이하 “외국인 교원”이라 한다)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외국인 교원이라 함은 외국인으로서 연구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교에 임용된 자를 말한다.

제3조(자격)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외국인으로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
2. 본교의 아학교육을 담당하고 강의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
3.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상 입국자격을 부여받은 자 또는 입국자격을 부여받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

제4조(임용) ① 외국인 교원의 임용절차는 외국인의 특성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5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, 관련부서 또는 관련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할 수 있다.

② 외국인 교원은 연봉 및 기간 계약제로 임용한다.

③ 외국인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

④ 외국인 교원은 현 임용기간 중의 외국인교원 평정결과 80점 미만인 경우 재임용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직급) 외국인 전임교원의 직급은 조교수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및 연구경력연수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위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6조(책임수업시간) 외국인 교원의 매학기 주당 책임수업시간은 14시간 이내로 한다. 다만, 책임수업시수를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에는 초과강의수당을 지급한다.

제7조(보수) ① 외국인 교원의 보수는 연봉계약제로 하되, 지급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임용기간의 연장시 연봉 조정은 본교 전임교원 보수 인상을 한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.

③ 상여금과 각종 제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퇴직금) 본교 외국인 교원은 임용기간 중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 가입하며, 그 적립

4-1-14 외국인전임교원임용규정

액은 퇴직금으로 대체된다.

제9조(복무) 외국인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복무규정 및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을 적용한다.

제10조(근무평가) 외국인 교원의 근무평가는 계약기간 중 6월, 12월에 연간 2회 실시하며, 이 자료는 재임용 및 연봉책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11조(구비서류) 외국인 교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5호 내지 6호는 임용 확정 후 제출한다.

1. 이력서
2. 외국인등록증 사본
3. 여권사본
4. 학력 및 경력증명서
5. 인사기록카드
6. 채용신체검사서(건강진단서)

제12조(기타)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인사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인 2017학년도 1학기 이후 처리된 근무평가 관련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